

의안번호	2208225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03.24.
추계번호	25C10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 (직위해제)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44조의3에 따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의무규정
		(제7항) 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44조의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제1항)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제8항)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2 (직위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4조의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존 운영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 부산, 경기, 충북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한편,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교육청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 한편, 질병휴직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²⁾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상태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개최에 따라 위촉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참석 수당 총액 및 심의 대상 교원에 대한 지원 관련 재정지출임

1)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그러나 안 제44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 예측이 어려움
 - 안 제44조의3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심의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하던 사항이 통폐합으로 이관된 것에 불과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 한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나, 현재 정신·육체질환 휴직자를 통합한 질병휴직자 통계만이 관리되고 있어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 횟수 예측이 어려움³⁾
- 또한 안 제44조의3제8항의 규정으로부터 심의 대상 교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기존에 유사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함
 - 안 제44조의3제8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교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권고 등이 결정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원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상담기관 1,191개소, 심리치료기관 218개소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심리상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先) 개인심리상담⁵⁾, 마음생(生)개인심리상담⁶⁾, 마음행(行) 개인심리상담 및 초기 치료비용 지원⁷⁾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 심리 검사 이후 전문가 상담 및 전문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정신질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

4) 24.9.1.기준

5)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8회(1회 50분) 지원

6)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10회(1회 50분) 지원

7)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하여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용 5회(각 50만원 이내) 지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지역	현원	내부위원	위촉위원
서울	13	4	9
부산	15	5	10
대구	10	4	6
인천	10	3	7
광주	11	4	7
대전	9	3	7
울산	10	4	6
세종	7	1	8
경기	9	4	5
강원	10	2	8
충북	7	3	4
충남	10	3	7
전북	12	5	7
전남	9	3	7
경북	9	3	6
경남	13	5	8
제주	9	4	5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임

2.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구성원임

3. 위촉위원은 교육청별 구체사항에 차이는 있으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원단체 추천인,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해당함

자료: 각 시·도교육청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	2	5	7
부산	—	1	—	1
대구	—	—	—	0
인천	2	2	9	13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1	2	3
세종	—	—	—	0
경기	—	2	3	5
강원	—	—	—	0
충북	—	1	6	7
충남	—	3	3	6
전북	2	3	3	8
전남	—	—	1	1
경북	—	2	8	10
경남	—	—	1	1
제주	—	3	—	3
합계	4	20	41	65

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건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